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8. 30.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8.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8.22.

다. 상정일자 :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6.8.3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 가. 제안이유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7일자로 합정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안 제2조 관련 별표)

가. 종전 : “동교로8길 58”

나. 변경 : “월드컵로5길 11”

### 3.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은모)

- 동 조례안은 합정동주민센터가 2016. 6. 27. 종전 소재지 “동교로8길 58”에서 “월드컵로5길 11”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1)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동교로8길 58”에서 “월드컵로5길 11”로 변경함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제2조 별표 중 동주민센터의 합정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동주민센터(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당초	합정동	동교로8길 58 (합정동)
변경	합정동	월드컵로5길 11 (합정동)

- 3)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 중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그 간 합정동주민센터 도로명 주소 부여 추진사항을 보면
    - 2016. 6. 2. : 건축 시행사에서 부동산정보과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2016. 6. 8. : 합정동주민센터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를 월드컵로 5길 11(합정동)으로 부여받았으며,
    - 2016. 6. 9. :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후 도로명주소를 공고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16. 7. 7 ~ 7.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도 없으며, 또한 합정동주민센터가 2016. 6. 27. 신축 이전됨에 따라 2016. 6. 8. 부동산정보과로부터 “동교로8길 58”에서 “월드컵로5길 11”로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받아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합정동주민센터가 “월드컵로5길 11”로 신축 이전하고 행정사

무를 시작한 2016. 6. 27.로 합정동주민센터소재지 변경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